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0-73호

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이 일부 또는 전부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7월 1일

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

1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, 폐지)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

가. 도로 결정(변경, 폐지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중로	2	115	7~15	보조간선도로	1,910	연산동 대로3-31	연산동 대로2-16	일반도로	건고 37 (1976.3.27.)	-
변경	중로	2	115	7~15	보조간선도로	684	연산동 대로3-31	연산동 2042-28	일반도로	건고 37 (1976.3.27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기정	중로	3	293	12	보조간선도로	502	연산동 1985-16	연산동 산181-1	일반도로	연고 35 (1996.1.18.)	-
변경	중로	3	293	6~12	보조간선도로	502	연산동 1985-16	연산동 산181-1	일반도로	연고 35 (1996.1.18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폐지	중로	3	297	12	국지도로	305	거제동 178-2	거제동 210-16	일반도로	부고 510 (1974.5.14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소로	1	6	10~17.5	국지도로	370	거제동 65-12	거제동 1525	일반도로	부고 510 (1974.5.14.)	-
변경	소로	1	6	4~17.5	국지도로	370	거제동 65-12	거제동 1525	일반도로	부고 510 (1974.5.14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기정	소로	1	15	10	국지도로	450	거제동 1449	거제동 산73-5	일반도로	부고 510 (1974.5.14.)	-
변경	소로	1	15	10	국지도로	380	거제동 676-406	거제동 산73-5	일반도로	부고 510 (1974.5.14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폐지	소로	1	16	10	국지도로	198	거제동 716-24	거제동 712-8	일반도로	부고 510 (1974.5.14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기정	소로	2	2	8	국지도로	230	연산동 1359-5	연산동 1366-13	일반도로	부고 148 (1972.4.20.)	-
변경	소로	2	2	4.5~8	국지도로	230	연산동 1359-5	연산동 1366-13	일반도로	부고 148 (1972.4.20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폐지	소로	2	9	8	국지도로	150	거제동 1091-2	거제동 986-7	일반도로	부고 510 (1974.5.14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기정	소로	2	10	8	국지도로	201	연산동 1833-4	연산동 1825-2	일반도로	부고 393 (1973.11.29.)	-
변경	소로	2	10	6~8	국지도로	201	연산동 1833-4	연산동 1825-2	일반도로	부고 393 (1973.11.29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기정	소로	2	11	8	국지도로	200	연산동 1811-276	연산동 1825-33	일반도로	부고 393 (1973.11.29.)	-
변경	소로	2	11	6~8	국지도로	200	연산동 1811-276	연산동 1825-33	일반도로	부고 393 (1973.11.29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기정	소로	2	19	8	국지도로	170	거제동 676-121	거제동 714-67	일반도로	부고 510 (1974.5.14.)	-
변경	소로	2	19	5~8	국지도로	170	거제동 676-121	거제동 714-67	일반도로	부고 510 (1974.5.14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소로	2	22	8	국지 도로	450	거제동 732-1	거제동 603-10	일반도로	부고 510 (1974.5.14.)	-
변경	소로	2	22	8	국지 도로	290	거제동 756-1	거제동 603-10	일반도로	부고 510 (1974.5.14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폐지	소로	3	2	6	국지 도로	165	거제동 1106-1	거제동 1039-2	일반도로	부고 510 (1974.5.14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기정	소로	3	4	6~12	국지 도로	380	연산동 대로1-2	연산동 1638-9	일반도로	부고 148 (1972.4.20.)	-
변경	소로	3	4	4~12	국지 도로	380	연산동 대로1-2	연산동 1638-9	일반도로	부고 148 (1972.4.20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기정	소로	3	9	6	국지 도로	46	연산동 1330-6	연산동 1359-2	일반도로	부고 148 (1972.4.20.)	-
변경	소로	3	9	4.5~6	국지 도로	46	연산동 1330-6	연산동 1359-2	일반도로	부고 148 (1972.4.20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폐지	소로	3	15	5~6	국지 도로	444	양정동 307-1	거제동 708-5	일반도로	부고 51 (1968.7.6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폐지	소로	3	29	6	국지 도로	100	거제동 1044-7	거제동 1040-2	일반도로	부고 510 (1974.5.14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기정	소로	3	30	6	국지 도로	80	연산동 767-14	연산동 768-6	일반도로	부고 158 (1972.5.30.)	-
변경	소로	3	30	5~6	국지 도로	80	연산동 767-14	연산동 768-6	일반도로	부고 158 (1972.5.30.)	미집행 구간의 실효

나. 변경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중로 2-115호선	중로 2-115호선	종점부 일부구간 연장 축소 (L=1,910→684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종점부 일부구간 연장 축소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중로 3-293호선	중로 3-293호선	일부구간 폭원 축소 (B=12→6~12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축소
중로 3-297호선	-	노선 폐지 (B=12m, L=305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
소로 1-6호선	소로 1-6호선	일부구간 폭원 축소 (B=10~17.5→4~17.5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축소
소로 1-15호선	소로 1-15호선	기점부 일부구간 연장 축소 (L=450→380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기점부 일부구간 연장 축소
소로 1-16호선	-	노선 폐지 (B=10m, L=198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
소로 2-2호선	소로 2-2호선	일부구간 폭원 축소 (B=8→4.5~8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축소
소로 2-9호선	-	노선 폐지 (B=8m, L=150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
소로 2-10호선	소로 2-10호선	일부구간 폭원 축소 (B=8→6~8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축소
소로 2-11호선	소로 2-11호선	일부구간 폭원 축소 (B=8→6~8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축소
소로 2-19호선	소로 2-19호선	일부구간 폭원 축소 (B=8→5~8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축소
소로 2-22호선	소로 2-22호선	기점부 일부구간 연장 축소 (L=450→290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기점부 일부구간 연장 축소
소로 3-2호선	-	노선 폐지 (B=6m, L=165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
소로 3-4호선	소로 3-4호선	일부구간 폭원 축소 (B=6~12→4~12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축소
소로 3-9호선	소로 3-9호선	일부구간 폭원 축소 (B=6→4.5~6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축소
소로 3-15호선	-	노선 폐지 (B=5~6m, L=444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
소로 3-29호선	-	노선 폐지 (B=6m, L=100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노선 폐지
소로 3-30호선	소로 3-30호선	일부구간 폭원 축소 (B=6→5~6m)	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축소

2. 실효일자: 2020. 7. 1.

3. 실효사유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제1항 규정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되어 그 효력이 상실됨.

4. 지형도면: 붙임 참조

5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“http://luris.molit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연제구(건설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